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[2018, 12, 13 규칙 제1424호]

일부개정 2025. 5. 13 규칙 제1571호 (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관리책임)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(이하 "터미널"이라 한다)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 또는 「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가 한다.
- 제3조(사용허가 범위) 시설의 사용·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사용허가 제출서류 등)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터미널 사용허가(대부)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 - 2.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 -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(별지 제4호서식)을 붙여 허가서(별지 제3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- **제5조(사용료)**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 「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0조, 제31 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. 〈개정 2025. 5. 13〉
- 제6조(장부비치)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부칙〈2025. 5. 13 규칙 제1571호,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			요하기(rut	コ) 人は	러기			처리기간					
	터미널 사용허가(대부) 신청서 10일												
	법	인 명		회 원 수									
신 청 자	소	재지			법인등	등록번호							
건 경 사	대 표 자	성 명			생년월일								
	자	주 소			전호	하번호							
사용재산의 표 시													
	사 업 비 내 역(천원)												
예 상 사업비 (세부내역	총	사업비	인건비	일반운 ⁽ 경 1	영 비	제세 공과금		그 밖의 경비					
별첨)													
사용재산의 목적과 내용	별 2	첨 사용	가능	1	-								

「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(또는 법인대표): (인)

연 천 군 수 귀하

	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				
구 비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(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						
서 류	 사업 계획서 전년도 추진사업 실적(해당 없을 경우 제외) 	1. 범인등기부 등본	수수료					
''	3. 법인인 경우 법인구성 현황 4. 기타 참고사항	1. 합인증기구 중단	없음			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 청 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■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사 업 계 획 서

	< 목	적 >	
	·	•	

□ 주요사업내용

□ 실적 및 계획

월 별	전년도 실적	사업년도 계 획

□ 법인구성 현황(개인은 제외)

○ 사무실 운영현황

설치 또는		직 원 수	<u>.</u>	사	무 실	그 밖의 사항
창립 일자	계	정규직	임시직	면적	임대료	→ n 1 / 1 8

○ 운송사업자 현황

설치 또는	,	직 원 수	È	가 입	사	무 실	그 밖의 사항		
창립 일자	계	정규직	임시직	회원수	면 적	임대료	<u> </u>		

■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

- □ 재산의 표시
- □ 신청인 주소

성명

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

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연 천 군 수

직인

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■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허 가 조 건

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로 한다.

제2조(사용기간)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사용료)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

- 제4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 금은 반환한다.
- 제6조(손해보험증서의 제출) 사용인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 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에 제출하여 야 한다. 다만,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 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**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 - 1.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

- 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- 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-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
 - 2.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- 제11조(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)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으려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용재산의 반환)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4조(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)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,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제17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.

■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군유재산대부 및 사용 정리부

소	Z	대 지	: 7	경기도	연	천균	<i>L</i>	(읍	· • E	1)	번	 길(t	먼지)					
		코드 번호							호 목						명칭			부속 사항
물건표시	토	지목					건	구	<u>'</u> 조 도					기	구조			
표 시	지	면적	전	체		m²	물		적	전	체		m²	타	형식			
		也勻	대브	쿠사용		m²		乜	4	대부	·사용	-	m²		수량			
적	3	3.																
누] 그	1			계	약						대	부	대부	··사-	용료정]수	사	용 자
허기 번호	/	사용목	-적	(갱신) 허	년월 가	일		기	て	<u>}</u>	사 료	용 액	금	액	징 년 월	수 일일	주소	성명
				년	월	일	ļ	4	월 월	일 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	년 년	월 월	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	년 :	월 월	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 Ļ		월 월 월	일 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l L	년	월	일 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	년	월 월	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	년	월 월	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	년 년	월 월	일 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i,	년	월 월	일								
				년	월	일	į į	년 년	월 월	일								
				년	월	일	ļ ļ	년	월 월	일 일 일								
				년	월	일	l l	년 년	 월 원	일 일 익								